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or Rights Protection*

설문원(Moon-won Seol)

E-mail: seol@pusan.ac.kr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5.01.16
최초심사 2025.01.19
게재확정 2025.01.27

ORCID

Moon-won Seol
https://orcid.org/0000-0001-8696-8351

초 록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교육이나 학술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비해 학술적으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는 실제 국내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정보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이 연구는 권리 패러다임의 기록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려할 제도, 실무, 이론 측면의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기록은 어떻게 권리 행사나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권리의 개념과 기록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록 자체가 행위성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록관리 역사에서 권리보호라는 역할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양 고대와 중세의 권리 문서와 그 역할, 특히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봉건학자(feudists)의 역할을 추적함으로써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적 기록관리의 전통을 확인하였다. 셋째, 근대 이후 지배층의 권리보호에서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현대 기록정보서비스 제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조사를 토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i)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제도화를 통한 법적 접근권의 확보, ii) 서비스 실무를 통한 지적, 물리적 접근권의 확보, 그리고 iii) 경합하는 권리 조정을 위한 정책, 실무, 윤리적 지향 등을 포함하였다.

ABSTRAC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supporting rights protection have garnered less academic attention than servic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support service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framework encompassing institutional, practical, and theoretical element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rights-based paradigm i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cords as instruments for the exercise or protection of rights. Through the analysis of rights conceptualization and records agency, the study demonstrates that records function as active agents in user relationships. Second, its historical investigation traces the evolution of rights documentation, examining their function in ancient and medieval Western societies, and analyzes the emergence of 'feudists' in 18th-century France as precursors to modern archival professionals. Third, it furth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archival services from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ruling class to providing universal access for citizens in the modern era. Based on this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 contemporary framework for rights-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democratic societies. This framework encompasses three key dimensions: i)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access to ensure universal service provision, ii)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and physical access through service practices, and iii) development of mechanisms for reconciling competing rights claims.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eywords: 기록, 권리보호, 시민의 권리, 정보 접근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Records, Right Protection, Civil Rights, Access to Information, Actor-Network Theory

1. 머리말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왔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권리 문서를 중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록이 없으면 개인이나 조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받기 어렵다. 여기에는 재산권, 신분권 등 수많은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의 어떤 권리를 수호하는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으나 기록의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랫동안 기록관리기관은 역사나 학술적 요구를 위한 서비스를 중심에 두어왔다. 사료(史料)로서의 유용성 관점에서 기록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국내외 기록관리기관에서는 역사학자나 학술 연구자를 핵심 이용자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영국의 기록학자 마가렛 프록터는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보존기록관리의 핵심 역할을 권리보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녀는 21세기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을 ‘권리의 보호자’로 보았다(Procter, 2017).

기록정보서비스는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민주주의를 통해 쟁취한 성과물이다. 이 연구는 ‘권리’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관리기관의 서비스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권리’에 대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록 자체의 속성, 그리고 기록 유통방법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먼저 기록의 본질적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기록은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의 재현물이며, 이후 새로운 행위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의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의 이용 가치를 역사 연구와 학술정보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효능은 권리의 보호에 있다. 기록이 권익이나 신원, 재산권, 인권 피해 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록의 70% 정도가 재산, 신분, 행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보호와 관련된다(국가기록원, 2022).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기록의 이용은 기록정보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특징을 규정한다(설문원, 2022). 기록의 이러한 도구적 가치를 인식한 것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근대기까지 기록은 주로 지배층이나 특권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아카이브는 이를 위한 보존소였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시민 전체로 확장되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

기록 유통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차이점도 살펴보겠다. 기록을 이용하려면 이에 접근할 권리가 필요하다. 단행본이나 학술지와 달리 기록은 대중적 유통을 위하여 생산되지 않으며 상업적 채널을 통해 유통되지도 않는다. 기록은 대부분 업무나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생산자 이외의 주체가 기록에 접근하려면 별도 허락을 받거나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기록에 접근할 권리(기록 접근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제도화를 특징으로 한다.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가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은 어떻게 권리 행사나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는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권리의 개념과 기록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록 자체가 행위성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권리보호라는 역할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서양의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 사례, 기록보존의 목적,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던 집단의 역할과 정체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기록정보서비스가 근대 이후 지배층의 권리보호에서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권리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 실무적, 이론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학술연구 지원이라는 서비스에 비해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제도적,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기록의 특성 및 기록유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권리와 기록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권리와 기록

2.1 권리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문서적 증거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많다. 특히 공공기록의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사회보장 등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권리(權利)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법이 인정하는 힘”(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22, 79) 혹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위키백과, 발행년불명). 여기서 권리는 법률적 개념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인 법이 공법(公法)인지 사법(私法)인지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나뉜다. 공권의 경우, 그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라면 국가적 공권, 개인이라면 개인적 공권(참정권·수익권·자유권 등)이라고 한다. 사권은 개인 간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의 내용에 근거하여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국내법상의 권리와 국제법상의 권리로 구분하기도 하며, 친권, 재산권, 참정권 등과 같이 권리인 동시에 그 행사가 의무인 것들도 있다(위키백과, 발행년불명).

이러한 권리의 개념에 입각할 때 ‘권리보호’는 정당하게 행사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보호하는 일이다. 따라서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관리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 행사와 보호를 위하여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권리의 대부분은 문서, 즉 기록이 있어야 보호받거나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이 철저히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한편, 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도 문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헌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볼 때 기록과 권리의 관계는 기록을 이용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록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라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록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권, 신원 보호, 참정권 및 각종 권리와 이러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적 권리로서 기록 접근권을 구분할 수 있다.

2.2 기록의 행위성과 권리

시대를 불문하고 기록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기록이 어떻게 권리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기록의 속성과 권리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기록이 권리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기록학에서는 기록이 가진 ‘수행력(performative power)’에서 찾는다. 언어가 정보 제공이나 의사소통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록도 어떤 내용을 설명(진술)하는 것을 넘어 지시, 약속, 선언, 상속, 전쟁 선포 등의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효과를 발휘하며, 이러한 행위가 서면 형식의 발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이 종료된 후에도 행위의 재현은 지속된다(설문원, 2021, 33; Yeo, 2010). 또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된 기록이 가진 수행력은 더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기록은 권리 행사나 보호의 도구로서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Yeo(2010)는 서얼(Searle)의 화행론(Speech Theory)을 응용하여, 기록의 수행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기록은 언약적(commisive), 선언적(declarative) 화행이 창출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약속 행위는 의무를 창출하고, 양도 행위는 소유권을 생성하는데, 기록의 고정성 때문에 이러한 의무와 소유권은 초기 약속이나 양도가 이루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며, 기록은 장기간에 걸친 ‘행위 수행’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

기록이 가진 수행 능력은 ‘행위성(agency)’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프랑스의 브뤼노 라투르가 주창한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적용하면, 기록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NT에서 ‘행위성’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세계에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도 행위성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기존의 사회학에서는 자유의지와 이성적 사고, 언어 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며, 따라서 자연, 사물, 기계와 같은 비인간은 인간 의지에 따른 산물이거나 수동적 객체이며, 따라서 행위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김환석, 2012, 45-46). 하지만 비인간이 행위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근대적 이분법과 인간 중심주의에 토대를 둔,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이다. 비인간이 “결정론적 인과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세계에 차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질과 같은 비인간의 행위성은 특히 기후 위기, 전염병의 확산, 과학기술의 변혁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구적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종갑, 2022).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자연 등을 구분하는 근대적 이분법으로는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만들어지는 ‘연결망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아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속성을 교환하고 정체성이 변화한다.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사례로 제시한다. 학교 근처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지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라는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의 명령이 비인간 요소들의 도움으로 변형되고 재형성되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행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은 하나의 행위자이며,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김환석, 2016). 하지만 사고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과속방지턱이 능동적이거나 주체적인 행위자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라투르는 행위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한다. 행위자 개념의 핵심은 행위가 유발한 결과, 다시 말해 ‘세계의 변화’에 있으며, 인간이든 아니든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행위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된다(이종혁 외, 2021, 137).

라투르는 ‘충을 든 사람’이라는 또 다른 예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을 설명한다. 미국에서 빈발하는

총기사고에 대해 총이 문제이며 따라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문제이며 따라서 범인을 처벌해야지 총기 규제가 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투르는 두 입장 모두를 비판한다. 어떤 사람이 총을 잡은 순간 호미를 들었을 때나 장난감 총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가능성과 의도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범인의 손에 들린 순간 총은 “집에 장식품으로 걸려있거나 가게에 전시되어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총”이 된다. 언제든지 발사되어 많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무기로 바뀐다. 이 때문에 기술이나 도구와 같은 비인간도 인간과 같은 수준의 행위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주, 2020).

이는 인간 행위자가 비인간 행위자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존재 형성에 비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형질 변경시키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과 기록의 관계도 “고정된 주체가 객관적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객체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기록과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생성되어 가는(becoming) 존재”로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박은주, 2020). 기록관리기관에 소장된 기록이 특정 이용자를 만나면서 이용자와 기록의 ‘동맹’이 형성되고, 기록과 이용자는 모두 동등한 행위자로서 상대를 변화시킨다. 기록은 또 다른 가치를 획득하거나 정체성을 갖게 되며, 이용자의 권리나 지식 상태, 정체성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화된 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때 기록과 이용자는 각각이 분리되어 존재하거나 고정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기록이 이용자와 연결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 기록도 이용자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

비인간 행위자에는 기록뿐 아니라 기록검색시스템이나 검색도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인간-비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에 분포되어, 그 연결망이 마치 하나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행위자’가 되고(김환석, 2012, 47), 실제 행위에서 인간들은 비인간들과 얽힐(entangled) 수밖에 없다(김환석, 2016, 221). 신분권, 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기록, 검색도구, 열람시스템 등 여러 비인간 행위자가 얽힘으로써 그 자체가 권리 행사나 보호를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행위자가 된다.

3.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전통과 변화

3.1 ‘역사주의’ 패러다임의 한계

기록정보서비스가 추구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려면 장기적인 기록관리의 역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Procter(2017)는 시간이 지나도 존재하는 기록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가 아카이브와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를 왜 인정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의 기록서비스가 아직도 ‘역사주의(historicism)’의 틀 안에 있다고 진단한다. ‘역사주의’의 지적 전통이 오늘날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보존기록(archives)은 오랫동안 역사 연구의 원천이었고 역사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되었다. 18세기 이후 각국에 설치된 국가기록관리기관은 국가건설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서사(national narrative)를 만드는 방편이었다.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으로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상상된 정치 공동체’로서 근대 국가가 탄생했다. ‘상상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역사의 공유, 국가의 집단적 기원, 전통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국가 서사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로 묶일 수 있었다. 국가기록관리기관은 이러한 국가 서사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았다(MacNeil, 2011). 이러한 역사주의 전통에 따라 아직도 서구의 많은 아키비스트들은 사료(史料)로서의 유용성 관점에서 기록의 2차 가치를 평가하고, 역사 및 학술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자신들의 핵심 역할로 자부하고 있다(Procter, 2017).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21세기 기록전문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가? Procter(2017)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 민주화’가 전개되면서 “역사학자를 통역자로 삼아 역사의 저장소로서 공식 아카이브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포스트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역사(history)’가 아니라 ‘복수의 역사(histories)’를 인정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역사의 보호자(keeper)’로서의 기록전문가의 역할도 약해졌다. 따라서 역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다 공익적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근대 기록관리기관들이 국가 정체성의 서사를 위한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기관이 운영되면서 역사 지식 생산의 주요 현장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가 권리의 보루”로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저장소로 자리 잡았다(MacNeil, 2011).

한편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전개된 이른바 ‘보존기록의 전환(archival turn)’ 현상은 기록 연구(archive studies)가 더 이상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보존기록관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아카이브의 민주화도 이루어졌다. Procter(2017)는 “우리가 직업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수 있는 역사주의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전문가의 존재 이유가 역사 연구의 지원이었던 기간은 기록관리의 긴 역사에 비추어보면 매우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전문가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는 기록관리의 긴 역사 속에서 통찰해야 한다. 영국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록전문직 교육은 역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지난 150여 년 동안 역사 연구의 지원이라는 역할이 공적 자금의 배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인정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한다(Procter, 2017).

전문직이 특정 업무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그들 업무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세월이 흘러도 존재하는 아카이브의 핵심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가 기록과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를 왜 인정해 왔는지에 답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21세기 기록전문직의 핵심 역할을 포지셔닝해야 한다(Procter, 2017). 전문직 스스로 아카이브의 핵심 역할을 정립하고, 기록관리의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중들도 기록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기록전문직의 고유한 기능과 기록관리기관의 핵심 사명을 찾기 위하여 Procter(2017)는 18세기 이후 프랑스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3.2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관리의 계보

권리 중심의 기록관리는 쉘렌버그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한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Procter, 2017, 298-299).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독일의 아키비스트로 활동했던 아돌프 브렌네케(Adolf Brenneke, 1875-1946)는 아카이브를 ‘권리를 보호하는 무기’라고 표현하였다(김정하, 2009, 8). 고대 로마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의 오래된 전통을 추적하면, 아카이브는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의 보고였다는 것이다.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소장물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인 둠즈데이북은 11세기 정복왕 윌리엄 1세가 정복지의 통치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토지조사서로 이 기록은 노르만 귀족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국왕 윌리엄의 지속적 통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기록은 재산권뿐 아니라 통치권을 뒷받침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 로마 교황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탈리아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바친다고 적은 콘스탄티누스 기진장(Donation of Constantine)이다. 훗날 위조문서로 밝혀지는 15세기까지 이 문서는 수백 년간 세속에 대한 교황 우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

활용되었다(Friedrich & Dillon, 2018, 143-144).

중세 유럽의 중요한 권리 문서 유형으로는 특허장(charter)을 들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왕과 황제들은 도시, 조직, 개인에게 권리와 특전을 부여하는 특허장(charter)을 하사하였다(Rosenblatt, 2018/2023, 58). 특허장에 명시된 특권이 쉽게 침해될 수 없었다. 특허장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였던 만큼 위조 사례도 많았다. 중세 고문서학도 특허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설문원 2021, 82).

Procter(2017)는 전문적 기록관리의 계보에서 18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봉건학자들(feudistes)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8세기 봉토에 대한 권리(영주권)를 보호, 강화하기 위하여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연구한 학자들이다. 영주가 고용한 이들은 영주가 누렸던 모든 종류의 권리를 추적하거나 오래되어 애매해진 권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기록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영주의 권리를 복원하고 토지대장(terrier)을 정비하는 것은 소규모 영주에게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으며, 봉건학자들은 서기, 측량사 및 지도 제작자들과 협력하여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독점했다. 따라서 이들의 기록관리는 본질적으로 권리를 중심에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이자 역사가, 법학자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Universalis, n.d.).

여전히 장원제(영주제) 행정에 의해 통제되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지주들의 부동산 소득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영지에 부과되고 수 세기에 걸쳐 누적된 모든 봉건적 의무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맥락과 기록의 고문서학적 맥락을 이해하고, 필체를 해독하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영지의 아카이브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의무금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봉건학자들이 모두 기록관리에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분명히 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이해했으며 이에 입각한 기록관리 방법론을 개척하였다. 봉건학자들은 고객의 현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미래에 접근하기 쉽도록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출판한 수많은 매뉴얼을 보면, 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원칙과 실제 정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네덜란드 매뉴얼을 작성한 물러, 페이스, 프루인, 그리고 영국의 힐러리 쟈킨슨이 근대 기록관리 이론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신화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 될 수 있다(Procter, 2017).

이러한 매뉴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에르 카미유 르무안(Pierre Camille Le Moine)이 1765년 출판한 『고문서학 실무(Diplomatique-Pratique)』 인데 아카이브 정리와 문서 관리의 기술(Traité de l'arrangement des archives et trésors des chartes)을 담고 있다. “토지대장이나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영주권이나 영지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 교구, 성당 지부, 수도원, 종교단체, 마을 회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나 정리”라는 긴 부제는 이 책의 범위를 보여준다. 고문서학 실무(Diplomatique-Pratique) 독자의 대부분은 기관(종교단체, 정부 및 기타 시 당국이 거의 90%, 나머지는 개인)이며, 모두 자신의 권리, 특권 및 재산에 대한 증거를 잘 규제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을 관리하려는 독자들이었다(Procter, 2017).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귀족 특권과 봉건 제도가 폐지된 후, 봉건학자의 상당수는 아키비스트가 되어 국가기록원이거나 공공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기록을 평가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Wikipedia, n.d.). 프랑스혁명 이후 “기록을 인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세계 최초의 국가기록원이 설립되고 새로운 기록관리제도의 문이 열렸지만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선별평가와 관리는 18세기 이전 구체제(앙시앵 레짐)에서 권리 문서를 관리하던 방식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독특한 ‘권리’ 개념을 가지고 구체제 하에서 능력을 연마해온 봉건학자들이 새로운 프랑스의 기록 정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도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8세기에

결쳐 활동한 이 직업 집단은 기록관리직의 계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Procter, 2017).

Procter(2017)는 1790년 프랑스 국가기록원의 설립이 ‘아카이브의 민주화’의 출발을 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뿌리 없는 사건이 아니며, 아카이브를 통제하는 사람이 권리를 통제한다는 인식의 연장에 있는 행위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 시기는 기록관리 활동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이 권리보호라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봉건학자라는 분명한 직업군에 의해 권리보호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분석하였다.

권리보호의 도구로 기록을 관리하는 관행은 기록을 유기체로 접근하는 관행보다 역사가 더 깊다. 권리 중심의 기록관리는 켈렌버그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패러다임과 다른 궤도를 형성하면서 현대 기록학 및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 사례는 봉건적인 특권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기록관리와 권리 사이의 절대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권리 패러다임은 1789년에 이미 붕괴되었지만, 권리보호라는 아카이브의 핵심 역할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누구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지는 그 사회의 가치와 연동시켜야 할 것이다. Procter(2017)는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권리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3 시민의 권리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고대나 중세 서구에서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록은 중요하게 관리되어 왔으나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었다. 프랑스의 아키비스트이자 역사학자였던 미셸 뒤샹(Duchéin)은 기록 접근권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대 왕들과 사제들이 만든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은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이나 최고 권력자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사실, 아카이브의 보존은 항상 권력의 행사와 연결되어왔다. 이는 기억의 소유가 통치와 행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었으며...(중략)... 비공식(non-official) 연구자에게 아카이브를 개방한다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탄생, 즉 기원전 4세기 아테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식 아카이브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마찬가지로, 선출된 행정관들이 반역죄 또는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기록보존전문가(the conservator of the archives)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Duchéin, 1983, 2).

봉건학자들이 보호해 준 권리의 주체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지주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18세기 기록학자 르무안은 아카이브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교구와 공동체 전체가 영주들에게 반기를 들고 세금을 거부하며, 종속의 굴레를 벗어던진 열등한 집단들이 구제도를 전복시키려” 할 때 아카이브의 수많은 문서가 영토를 방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Friedrich & Dillon, 2018, 143-144).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권리를 보호하는 기록관리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 기능이 행사되는 패러다임은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특권층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특권층만 가능했던 기록 접근이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혁명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식민지 정부나 주민을 위한 정부정보(government information)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혀있다(Jaeger & Taylor, 2019, 78). ‘접근할 권리’

라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다. 미국 독립국가의 설계자들은 분권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정부를 세운다는 기초 아래 “혜게모니보다 담론을 장려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정보접근과 교환이 속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Jaeger & Taylor, 2019, 79). 이러한 사상은 대중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관리의 전통과 정보자유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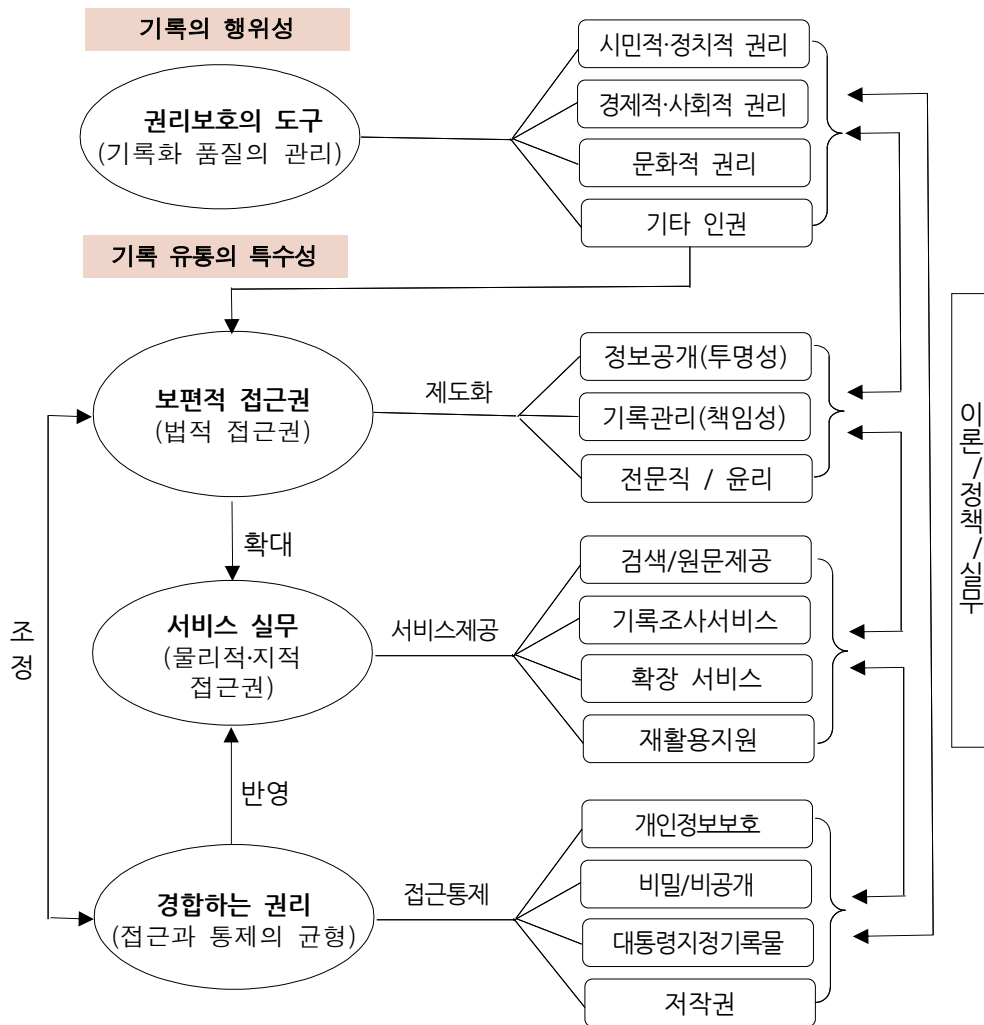
혁명 직후 프랑스에는 “인민에게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이 설립되었다. 기록이 왕족이나 귀족 등 특권층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간을 벗어나 국가 차원의 중앙관리기관에 수집, 보관되면서 일반인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의 제15조에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행정에 대한 책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었으며, 이 선언에 따라 1794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는 국가기록원 설립의 근거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역사 연구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을 통해 오래된 기록을 국유화된 공공의 자산으로 보존하려는 열망”이 있었다(Cunningham,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정, 사법, 교회 등 모든 아카이브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선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oel et al., 2021, 12).

19세기 이후 프랑스에서는 새롭게 얻은 권리를 적용받으려는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록보존소들이 구조와 규정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서는 주민등록부와 토지등록부였다. 프랑스 민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시민들은 개인의 신분(identity)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으며, 이는 주민등록부를 통해 문서화되었다. 한편 재산권은 토지등록부 제도를 통해 보장되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새로운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Boel et al., 2021, 12-13).

한편 각국에서 정보공개법 혹은 정보자유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공공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청구하는 정보 대부분은 공공기록물이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 제정 이후 도서관과 기록관들이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실무와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이용목적도 다양해졌다(Oestreicher, 2020, 1). 공공기록에 대한 접근이 시민의 권리가 되면서 기록은 국가나 사회 지배층의 권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4. 권리보호 기반의 현대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실무뿐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론이 있어야 한다. 권리 기반의 현대 기록정보서비스 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도, 실무, 이론 차원의 구성 요소들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2장에서도 밝혔듯이 권리 패러다임에서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재산권, 신원과 신분권, 참정권 등과 같이 기록의 행위성을 통해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권리들이다. 이러한 권리는 ‘충분하고 정확한 기록화(adequate and accurate documentation)’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권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록 접근권이다. 접근권은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내재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행사하려면 사회적 제도와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1> 권리보호 기반의 현대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4.1 권리보호 도구로서 기록의 가치와 품질 관리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을 수립할 때 ‘이용자 요구 충족’과 같이 모호하거나 기능적인 목표 추구를 넘어 시민권 보호와 같이 사회적 맥락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기록의 본질적 속성이 개인이나 조직의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Procter(2017)는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권리 패러다임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의 보호를 아카이브의 중요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3.3절에서 언급했듯이 근대 국가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국민의 신원을 입증하는 기록, 즉 주민등록부와 토지 재산권에 대한 기록이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밖에도 다양한 기록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서비스를 보면 권리와 기록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Boel et al., 2021, 15-16). 가령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의료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등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특히 출생기록이 대표적이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생긴다(다음백과, 발행년불명). 이때 출생을 입증하는 문서적 증거 없이는 권리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출생기록이 없는 5세 미만의 아동이 27%에 달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법적 신원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Boel et al., 2021, 16).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¹⁾이 있다. 바로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들로 국내에 약 2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이나 미래 설계를 할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고난”이 된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갖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다(은유, 2021).

한편 입양 기록의 부실한 관리는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 년간 20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평판을 받았으나, 국가 차원의 입양 기록관리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PD 수첩, 2025).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입양기관들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한 기록을 입양인들에게 제공하여, 엉뚱한 사람을 친부모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입양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기록을 받아 잘 관리하겠다는 공공기관의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 10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은 폐업기관 입양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입양기록물 진산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상당수의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고 아예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아동들까지 다수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류가 수두룩했다. 신원 관련 정보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뿐 아니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입양인들은 “기록이 바로 우리”라며, 만약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조작되었거나 완전하지 않다면.....우리에게는 다른 단서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라며 절망했다(강혜인, 2024). 결국 대한민국이 입양인들에게 ‘두 번의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 기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사업은 영국의 MIRRA(Memory-Identity-Rights in Records-Access) 연구 프로젝트다. 영국 런던컬리지대(UCL)의 엘리자베스 쉐퍼드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퇴소자)의 관점에서 기록에 대한 요구와 영향을 조사하였다(Shepherd et al., 2020). 이 연구에 따르면, 퇴소자들은 “삶의 방향성을 찾거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싶을 때” 자신의 보육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록은 퇴소자들이 자전적 기억을 재구축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²⁾ MIRRA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시설 생활을 경험했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참여형 기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Shepherd et al., 2021). 이러한 사례는 기록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와 기억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신원 관련 기록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명부, 과거사위원회 기록,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등이 있다. 강제동원자 명부와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경우, 폭력과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보상을 위하여 대규모 열람이 이루어졌다(설문원, 2022). 또한 독립운동판결문을 포함하여 형사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자 신분장 등을 국가기록원은 ‘신분 관계’와 구분하여 ‘행형 관계’ 기록으로 분류하지만, 이러한 기록에도 개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신청, 진상규명에 활용된다(설문원, 2022). 국가기록원에 대한 기록 청구의 70%는 재산, 신분, 행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체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이용목적을 가지고 있다(국가기록원, 2022; 설문원, 2022).

1)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는 국내에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쓴 책이다.

2) 가령, 부모라면 절대 병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행동(화가 나서 접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우발적 행동)도 병리적 증상이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퇴소자를 평생 따라다녔다. 시설아동의 보육기록에는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신의 경험과 다른 내용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기억과 다른 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치료와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페루의 경제학자 헤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의 주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기록 없이 복잡한 부동산 소유권 체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록시스템이 가난한 국가의 다수 대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Yeo, 2010). 데 소토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재산이나 토지, 기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원이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아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대출 담보나 투자 자본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 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기록은 토지 관련 문서이다.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의 토지 관련 문서들이 다량으로 청구되고 있다(설문원, 2022).

4.2 보편적 접근권의 제도화

프랑스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알 권리’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즉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려면 충분한 정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는 판결이 나왔다. 긴 기간에 걸친 시민운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록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참여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시민이 입법이나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므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권을 보장받으려면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정보공개법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생산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기되었다면(‘정보 부존재’) 시민의 알 권리와 접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공공기관의 기록생산을 강제하고 불법적 폐기를 막는 대표적인 법률이 공공기록물법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인다면 공공기록물법은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도 정보공개 담당자나 기록전문가가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또한 공개와 접근제한, 기록의 평가·폐기와 보유 등은 기록전문가의 재량과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권을 위한 제도는 정보공개,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4.2.1 정보공개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을 제공할 때는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한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유권규약이나 유럽인권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정보 접근권을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접근권은 보통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선결 조건 혹은 필수도구라고 해석한다(박진아, 2019). 인권 조항에 포함된 다른 권리에는 표현의 자유, 공무에 참여할 권리, 프라이버시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생명권, 차별금지 등이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적극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공무에 참여할 권리에 도 정보 접근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정부에 참여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행사될 수 없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한 바 있다(박진아, 2019).

여러 인권조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권리이지만,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정보 접근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인정받는다. 청구인이 보육원에서 보냈던 기간에 대한 정보, 보안경찰이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기록, 의료기록 등의 경우, 특별한 권리제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박진아, 2019).

또한 정보 접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이다. 과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거하여 정보 접근권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이 모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특히 건강권, 안전하고 건강할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이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박진아, 2019, 248-249).

4.2.2. 기록관리제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매체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의 대상이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를 “기록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는 ‘기록 부존재’로 인한 공익 침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에도 공공업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남겨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는데, 이는 그해 발생한 씨랜드 화재 사건³⁾과 관련이 있다. 최종 결재 문서만을 관리하는 당시 관행 때문에 화재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공식 문서가 없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셌으며,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단계까지 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포괄적 기록화의 원칙이 당시 입법 진행 중이던 공공기록물법에 반영되었다(설문원, 이승역, 2020). 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공기관이 업무활동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생산하고, 위법적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생산 의무 및 적법한 폐기에 대한 공공기록물법 규정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의 가치는 영구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평가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해야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록 관리기관들은 국가기록(national archives)의 대범주에 시민의 권리보호(혹은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와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설문원, 이승역, 2020; 현문수, 2021).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 평가정책문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26조의 별표1(기록물의 보존기간 별 책정기준)의 영구보존 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권리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2호(국민, 기관,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및 의무 증명), 4호(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 5호(국민, 기관, 단체, 조직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제도 결정 및 변경), 8호(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형질,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16호(토지 등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 관리, 확인 및 증명) 등이다(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115). 이러한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나 조직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 NARA의 평가정책(Appraisal Policy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07)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 권리 보호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기록,” “조직 및 정부 기관의 법적 지위 권리 및 의무에

3) 씨랜드 화재 사고는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에 위치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이다.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 시간이 지나도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성이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10).

또한 국가기록원 등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서 개인과 조직의 권리보호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원(2022)은 국가기록원이 기관의 사명이나 서비스정책문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의 관리와 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기록의 이용자와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도 이는 합당한 주장이다. 권리보호가 기록관리기관의 사명이라는 점은 해외의 많은 기록물관리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가 발표한 ‘공공 정책 아젠다(2017-2018)’에서는 보존기록(archival sources)이 “개인과 조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와 기관의 책임성을 보장하며, 역사 정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AA, 2017).⁴⁾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의 기관 사명문에도 미국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설문원, 2022).

4.2.3 전문직 윤리와 실천

법률과 규정만으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문직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키비스트 윤리강령” 등 기록전문직의 윤리 관련 문서에는 기록전문직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보편적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다. ICA(2012)가 2012년 발표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에도 기록전문직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으로 기록에 대한 공평한 접근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미국 코넬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더바 고쉬(Durba Ghosh)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초기 1세기 동안 유럽 남성과 동거하거나 결혼한 인도 여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주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 접근을 거부한 영국과 인도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MacNeil, 2011). 전문직 윤리의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투 대주교는 “기록은 인권침해를 막는 튼튼한 보호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설문원, 2021, 285; Millar, 2019, 67). 유엔 인권위원회의 「무차별주의와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 원칙」에는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기억을 보존할 의무, 희생자의 알 권리, 알 권리 실천의 보장 등 기록의 역할과 관련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설문원, 2021, 286-287). ICA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2016년 「인권 옹호를 위한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록보유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는 신조에 따르고 있다(ICA, 2016).

아키비스트들이 결성한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아키비스트회(Archivists without Borders, AwB)’도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1998년 바르셀로나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아카이브를 통한 인권보호와 설명책임성 증진을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Archivists without Borders, n.d.; Boel et al., 2021, 61).

기록전문직과 단체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조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의 중요성과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접근의 윤리에는 소외 집단 공동체나 장애인 등을 위한 공평한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SAA(2017)는 이러한 기록을 확인하여 보존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공공 정책과 자원 배분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공공 정책에는 법률, 행정 명령, 사법적 결정, 재정지원 우선순위, 기타 규제 조치 등 아키비스트나 보존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 정책(연방, 주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

4.3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실무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했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실무를 통해 지적 접근권과 물리적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에 대한 법적 접근권 행사를 넘어 고도화된 지적 접근(intellectual access)과 물리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지적 접근을 위해서는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색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 확인을 위한 문서는 대장류나 사안 파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계층적인 기술뿐 아니라 인명, 지명, 사건명 등과 같이 기록집합체의 특성을 고려한 색인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명부나 지적(地籍)기록물, 판결문 등에 대하여 인명, 지명, 주소, 죄명 등과 같이 기록의 특성과 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색인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색인 작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인의 효율화는 물론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권리 관련 문서들의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권리 행사나 보호를 위해 기록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은 대체로 질 높은 기록조사서비스(archival reference service)를 필요로 한다. 단순히 열람 제공을 넘어 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와 질의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검색 전략을 수립하여 목적과 요구에 적합한 기록을 제공하려면 소장 기록에 대한 지식, 질의 주제에 대한 맥락 지식, 검색도구에 대한 지식, 이용자와의 소통 역량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설문원, 2022). 한편 인권 피해자를 위한 기록서비스는 공감에 기반한 세심한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기록관리기관은 기록조사를 전담하는 아키비스트(reference archivists)를 배치하여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록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자유와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기록을 재산권이나 신원의 확인과 같은 증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 기록을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콘텐츠나 컬렉션을 만들기 원한다. 이러한 활용은 기억할 권리, 알 권리와 문화적 권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기관들은 확장 서비스(outreach)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접근 제공을 넘어 서비스 및 이용자층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업무와 기록관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작업한 결과물의 편견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알 권리도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데이터세트 형식의 기록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는 제공받은 기록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15년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알고리즘을 모른 채 제공받은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Jeurgens, 2017).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아 원시코드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알고리즘의 유형,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기관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국가기술표준원, 2023, KS X 8001).

4.4 접근과 통제의 균형과 조정

기록 접근권은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기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권리들이 존재하며 이는 기록서비스 현장에서 접근권과 충돌한다. 따라서 접근권이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현대 기록정보서비스의 지형이 <그림 1>의 하단에 표현되어 있다.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⁵⁾, 저작자의 권리, 그밖에 국익이나 공익적 이유로 기록에 대한 접근이 통제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비공개,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비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다. 때로는 기록 증거자의 요구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기록정보서비스 정책이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먼저 해당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청구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따져야 한다. 동일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요청이라 해도 어떠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서로 충돌하는 권리의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록전문가는 이를 단지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기계적인 중립과 균형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전문직 윤리와 기록정보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잊힐 권리 법제’에 대한 IFLA(세계도서관연맹)와 ICA의 대응이다. 잊힐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서비스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잊힐 권리는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면서 법제화되었다. EU 28개국에 적용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IFLA(2016)는 잊힐 권리를 존중하지만, 잊힐 권리가 학술적이거나 공익 목적의 ‘검색할 권리’와 알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8년에 이미 “역사 기록에 담긴 개인식별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을 통해 인명 검색이 필수적인 학술 및 전기 연구자들의 검색할 권리를 옹호하였다(IFLA, 2008).

2020년에는 ICA가 IFLA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아카이빙에 관한 성명(IFLA-ICA Statement on Privacy Legislation and Archiving)”(IFLA & ICA, 2020)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 소장된 기록의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잊힐 권리가 ‘보존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CA 윤리강령(ICA's Code of Ethics)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문직의 판단에 따라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포함)에 따른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 기밀성, 문화적 민감 요소는 전문직 윤리에 따라 엄격하게 접근을 제한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록유산이나 기록에 담긴 정보의 완전 파기나 삭제를 허용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록의 재활용 지원과 저작권 보호, 기록생산 및 등록 촉진과 접근권이 대립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등에 대해서도 기록전문가 개인이 아니라 전문직단체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ICA나 IFLA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전문직단체들이 기록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정책 대안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LA-ICA 공동성명에 “아키비스트들은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과도한 규제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록전문직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기록전문직은 법규 준수를 중시해야 하지만, 시민의 권리와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더 나아가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5. 맺음말

‘시민의 권리’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5)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며, 개인이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나 관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않는 기록관리의 핵심 역할은 권리보호이며, 이는 기록이 행위나 활동의 믿을 만한 재현물로서 자체적인 행위성을 갖는다는 속성과 관련된다. 보호해야 할 권리가 누구의 어떤 권리인지는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록 접근권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또한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수호해야 할 대상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기록생산과 기술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Procter(2017)의 논문을 읽게 되었으며, 그 논문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길잡이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교육이나 역사 연구 지원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강조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서비스 현장에서는 권리 문서를 찾는 이용자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학계가 지나쳐서는 안 되며 또한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권리보호, 혹은 시민의 권리보호라는 키워드는 기록전문직의 정체성, 현대 사회에서 기록관리의 핵심 역할을 찾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록관리가 공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인정받을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론 연구나 교육지원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자칫 증빙문서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역할 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서비스에서 고려할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으로 포괄적이며, 접근권도 법적 접근권 뿐 아니라 물리적, 지적 접근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왜 중요한지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다만 권리보호를 위한 전통을 서구에서만 찾고, 프랑스 봉건학자라는 다소 지엽적인 사례만을 제시한 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다. 우리나라 역사와 국내 사례를 포함한,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인 (2024. 8. 26.). 백지 입양기록 1: 10년을 했는데 엉터리? ...복지부, 입양 기록 전산화 사업 감사 착수. 뉴스타파.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7QFcR>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7호.
- 국가기록원 (2022).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 e나라지표.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1
- 국가기술표준원 (2023). 정보기술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 (KS X 8001:2023).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22).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서울: 국회도서관 법령정보실.
- 김정하 (2009). 기록물관리: 시민의 권리와 권력의 균형. 인문논총, 62, 3-42.
<https://doi.org/10.17326/jhsnu..62.200912.3>
- 김종갑 (2022). 신유물론의 물질과 마음. 몸문화연구소 지음.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서울: 필로소픽, 259-291.
- 김환석 (2012).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도전: 비인간 행위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0, 37-66.
<https://doi.org/10.17209/st.2012.05.20.37>
- 김환석 (2016).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2, 208-231.

- <https://doi.org/10.18207/criso.2016..112.208>
- 다음백과 (발행년불명). 권리능력. 출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3182a>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전자기록 등 기타 특수유형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정책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741050-000108-01). 국가기록원.
- 박은주 (2020). 기계도 행위할 수 있는가? :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2(4), 1-26. <https://doi.org/10.15754/jkpe.2020.42.4.001>
- 박진아 (2019).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2), 235-258. <https://doi.org/10.16960/jhhr.20.2.201906.235>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서울: 조은글터.
- 설문원 (2022).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103-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3.103>
- 설문원, 이승억 (2020).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47-6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47>
- 위키백과 (발행년불명). 권리.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
- 은유 (2021).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파주: 창비.
- 이종혁, 유금복, 박정우, 윤혜경, 박형용, 이선경 (202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과학적 실험의 교육적 함의: '순환하는 지시체'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5(2), 133-150. <https://doi.org/10.24231/rici.2021.25.2.133>
- 헌법재판소 (1989). 헌법재판소 1989.9.4.자 88헌마22 결정.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출처: https://ecourt.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
- 현문수 (2021).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기록학연구*, 67, 139-203. <https://doi.org/10.20923/kjas.2021.67.139>
- PD수첩 (2025. 1. 4.). [1448 회] 사라진 입양 기록: 나를 지운 나라. MBC. 출처: <https://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36101043100000>
- Archivists without Borders (n.d.). Available: <https://awbuschapter.wordpress.com/>
- Boel, J., Canavaggio, P., & Quintana, A. G. (2021). *Archives and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 Cunningham, A. (2005). Archival institutions. In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Cambridge: Chandos Publishing, 21-50.
- Duchain, M. (1983). Obstacles to the access, use and transfer of information from archives: a RAMP study, PGI-83/WS/20. UNESCO Digital Library.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57672>
- Friedrich, M. & translated by Dillon, J. N. (2018). *The Birth of the Archive: A History of Knowledge*.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CA (2012).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Available: <https://www.ica.org/resource/principles-of-access-to-archives/>
- ICA (2016).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Available: https://www.ica.org/app/uploads/2023/12/ICA-HRWG-Basic-Principles_endorsed-by-PCOM_2016_Sept_English.pdf
- IFLA (2008, December 3). IFLA 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Available:

-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statement-on-access-to-personally-identifiable-information-in-historical-records/>
- IFLA (2016, February 25). IFLA issues Statement on Right to be Forgotten. Available: <https://www.ifla.org/news/ifla-issues-statement-on-right-to-be-forgotten/>
- IFLA & ICA (2020, February 26). IFLA-ICA Statement on Privacy Legislation and Archiving.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ica-statement-on-privacy-legislation-and-archiving/>
- Jaeger, P. T. & Taylor, N. G. (2019). *Foundations of Information Policy*. Chicago: ALA Neal-Schuman.
- Jeurgens, C. (2017). Threats of the data-flood: An accountability perspective in the era of ubiquitous computing. In Smit, F., Glaudemans, A., & Jonker, R. eds. *Archives in Liquid Times*. Den Haag: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196-210.
- MacNeil, H. (2011). Trust and professional identity: narratives, counter-narratives and lingering ambiguities. *Archival Science*, 11(3-4), 175-192. <https://doi.org/10.1007/s10502-011-9150-5>
- Millar, L. A. (2019). *A Matter of Facts: The Value of Evidence in an Information Age*. Chicago: ALA Neal-Schuman: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Oestreicher, C. (2020). *Reference and acces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rocter, M. (2017). Protecting rights, asserting professional identity. *Archives and Records*, 38(2), 296-309. <https://doi.org/10.1080/23257962.2017.1285754>
- Rosenblatt, H. (2018). The lost history of liberalism. 김승진 옮김 (2023).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 공동체의 도덕, 개인의 윤리가 되다*. 서울: 니케북스.
- SAA (2017). *SAA Public Policy Agenda (2017-2018)*. Available: <https://www2.archivists.org/advocacy/public-policy/saa-public-policy-agenda/2017-2018>
- Shepherd, E., Hoyle, V., & Lomas, E. (2020). Project MIRRA: Memory - Identity - Rights in Records - Access. *Comma*, 2020(1-2), 97-110. <http://doi.org/10.3828/comma.2020.6>
- Shepherd, E., Sexton, A., Lomas, E., Williams, P., Denton, M., & Marchant, T. (2021). MIRRA app SRS: Memory - Identity - Rights in Records - Access Research Project: A Participatory Recordkeeping Application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SRS). Zenodo.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5599430>
- Universalis (n.d.). *feudiste*. Available: <https://www.universalis.fr/encyclopedie/feudiste/>
- Wikipedia (n.d.). *feudiste*. Available: <https://fr.wikipedia.org/wiki/Feudiste>
- Yeo, G. (2010). Representing the act: records and speech act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1(2), 95-117. <https://doi.org/10.1080/00379816.2010.5067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Amendment No. 10.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98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eptember 4, 1989, 88Hun-Ma22. Constitutional challenge to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public authorities. Available: https://ecourt.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
- Daum Encyclopedia (n.d.). *legal personality*. Available: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3182a>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487.
- Eun, Yu (2021). Existing but Non-Existent Children: Storie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Paju: Changbi.
- Hyun, Moonsoo (2021).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environmental auth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ppraisal and selection of Nati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7, 139-203. <https://doi.org/10.20923/kjas.2021.67.139>
- Kang, Hye-in (2024, August 26). Blank adoption records 1: 10 years in the making, and it's a mess? ...Welfare Ministry launches audit of adoption records computerization project. *Newstapa*. Available: <https://newstapa.org/article/7QFcR>
- Kim, Hwan-Suk (2012). STS as a challenge to the social: focusing on the question of nonhuman agency. *Society and Theory*, 20, 37-66. <https://doi.org/10.17209/st.2012.05.20.37>
- Kim, Hwan-Suk (2016). Toward the material turn of the social sciences. *Economy and Society*, 112, 208-231. <https://doi.org/10.18207/criso.2016..112.208>
- Kim, Jonggab (2022). Matter and mind in Neo-Materialism. In *The Institute for Body Culture. Neo-Materialism*. Seoul: Philosophic, 259-291.
- Kim, Jung-Ha (2009). Archivism: the balance between civil right and political power. *Journal of Humanities*, 62, 3-42. <https://doi.org/10.17326/jhsnu..62.200912.3>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23). Stakeholder Common Influencing Factors and Use Case Collection Templa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KS X 8001:2023).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
- Lee, Jong-Hyeok, Ryu, Kumbok, Park, Jeongwoo, Yoon, Hye-Gyoung, Park, Hyoung-Yong, & Lee, Sun-Kyung (2021). Implications of scientific practices on science education from the Actor-Network Theory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oncept of 'circulating 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25(2), 133-150. <https://doi.org/10.24231/rici.2021.25.2.133>
- Legal Information Cente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 Korean Law Translation Center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 *Core Korean-English Legal Glossary*. Seou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 Myongji University Industry-Academia Research Center (2024). *A Study on the Archival Appraisal Policy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and Other Special Types of Records*. (Publication No. 11-1741050-000108-01).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2). Statistical data of archival servic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eNARA Indicators. Available: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761
- Park, Eun Ju (2020). Can machine be an actor? : drawing upon the Actor-Network Theory by Bruno Latour.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2(4), 1-26. <https://doi.org/10.15754/jkpe.2020.42.4.001>
- Park, Jina (2019). A study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20(2), 235-258. <https://doi.org/10.16960/jhrl.20.2.201906.235>
- PD Notebook (2025, January 4). [no 1448] Disappeared Adoption Records: The Country That Erased Me. MBC. Available: <https://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36101043100000>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20309.
- Seoul, Moon-won (2021). *Understanding Archival Science*. Seoul: Joeungeulteo.
- Seoul, Moon-won (2022). *A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3), 103–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3.103>

Seol, Moon-won & Lee, Seung-eok (2020). Major Issues and Tasks of Restructuring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 47–6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47>

Wikipedia (n.d.). right. Available: <https://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